

서울특별시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미술영재)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59호
- 나.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안일자 : 2022년 8월 29일
- 라. 회부일자 : 2022년 9월 02일

2. 제안이유

- 저소득층 미술영재 교육 지원 사무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1조에 의거, 예술에 재능이 있으나 경제적 여건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을 발굴·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예술적 잠재력 발현과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을 위하여 경험 및 전문성과 인적·물적 인프라 등이 풍부한 민간에 교육을 위탁·운영 중이며
- 공모를 통한 재위탁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업명 : 저소득층 미술영재 교육 지원
- 사업내용 : 미술에 재능이 있는 저소득층 학생 발굴, 대학 등의 인적·물적 인프라와 전문성을 활용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
- 교육대상 :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총 100명
- 교육기간 : 약 9개월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위탁(공개모집)

나. 주요 위탁 내용

- 위탁기간 : 3년(2023.1.~2025.12.)
- 위탁업무
 - 교육생 모집 및 선발, 교육 과정 운영
 - 교육커리큘럼 기획 및 교수진 구성
 - 교육장소 및 협력시설, 교육 기자재 및 물품 확보
- 소요예산 : 250,000천원 ※ 1년 위탁기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1조(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3년 예산 편성 필요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22년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22.7.26.)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가. 동의안의 개요

-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저소득층 예술영재(미술영재) 교육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만료일(2022.12.31.)이 도래됨에 따라 재위탁하기에 앞서 서울시의회의 동의¹⁾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나. 예술영재(미술) 교육 현황

- 서울시는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 사업(미술교육과 음악교육)을 각각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 거주 저소득층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를 대상(미술 100명, 음악 150명)으로 운영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예술영재(미술영재) 교육 지원(이하 “미술영재 지원 사무”)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자녀 중 미술에 재능이 있는 자를 적극 발굴,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예술적 잠재력 발현 및 자아실현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

< 미술영재 민간위탁 현황 >

- ▶ 수탁기관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 수탁기간 : 2020.1.1.~2022.12.31.(3년)
- ▶ 사업대상 : 저소득층 초1~고1 학생 총 100명
- ▶ 추진방법 : 신규위탁 추진
- 위탁기간 : 2023.1.1.~2025.12.31.
- ▶ 주요사업 : 교육생 모집 및 선발, 교육 과정 운영, 교육커리큘럼 기획 및 교수진 구성 등
- ▶ 2023년 소요예산(안) : 250백만원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미술영재 지원 사무 수탁기관 및 예산 현황 >

구 분	수탁기관	선 발	예산
2011년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개모집)	1억원
2012년		재위탁(공개모집)	1억원
2013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재위탁(공개모집)	1억원
2014년	서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재위탁(공개모집)	1억원
2015년		재위탁(공개모집)	1억원
2016년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재위탁(공개모집)	1억원
2017년		재계약	1.5억원
2018년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재위탁(공개모집)	2억원
2019년			
2020년	한양대학교 산학협력	3년 재계약	2억원
2021년			2억원
2022년			2.5억원

- 미술영재 지원 사무는 최초 위탁(2011년~2012년) 이후 2018년부터 현재까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하여 이론·실기수업, 체험학습 및 전시회 개최 등 발상, 조형, 디자인, 미디어 등 차별화된 커리큘럼과 다양한 미술 분야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음.

< 미술영재 지원 사무 성과 현황 >

구 분	교육 목표 인원	교육 수료 인원	수료율(%)	세 부 성 과	
				예술학교 진학	콩쿠르 수상
2011년	60	60명	100%	-	-
2012년	60	101명	163%	-	17명
2013년	60	83명	138%	-	-
2014년	60	60명	100%	9명	7명
2015년	60	60명	100%	2명	19명
2016년	60	60명	100%	-	-
2017년	100	102명	102%	1명	11명
2018년	100	99명	99%	5명	8명
2019년	100	100명	100%	4명	8명
2020년	100	100명	100%	3명	1명
2021년	100	100명	100%	4명	15명
합계	860	925명	108%	28명	86명

- 미술영재 지원 사무의 성과를 살펴보면, 2011년 실시된 이래 현재 까지 총 925명의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사업대상이었으며, 이중 예술학교 진학은 3%인 28명, 콩쿠르 수상은 9.3%인 86명의 실적을 보임.

< 최근 3년, 미술영재 지원 사무 만족도 결과 >

연도	교육 만족감 (교육 환경 등)	재참여 의사	온라인 수업 만족도 (환경·재료 적절성)	비고
2019	93.8%	86.0%	-	
2020	94.9%	82.1%	96.2%	코로나19 로 인한 비대면 수업 진행
2021	94.9%	91.9%	97.5%	

- 또한, 최근 3년 미술영재 지원 사무의 만족도 조사 결과 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과 2021년에는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었음에도 인적·물적 인프라와 전문성을 활용하여 교육생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다. 민간위탁 타당성

- 미술영재 지원 사무의 수탁기관은 ▶사업 전체 프로그램 기획, ▶교육커리큘럼 구성, 교수진 섭외, ▶교육생 모집 및 선발,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운영 등 홍보방안, ▶교육생(졸업생 포함)의 진학 현황, 수상실적 등 사업추진 성과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함.
- 시장은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들이 균등한 문화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기회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따라서 동 사무는 미술교육이라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므로 민간의 우수한 자원과 시설을 활용하는 등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
- 미술영재 지원 사무는 5억원 이하 사무로 종합성과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연 1회 문화본부의 지도·점검을 받았으며 2019년 1건, 2020년 1건 지적사항이 발생했고 향후 동일한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됨.

< 미술영재 지원 사무 지도·점검 결과 >

연도	지적사항	조치사항
2019	강사내역 등 원천세 납부내역 누락	누락 자료 보완 요청 및 지출결의서 오류 정정
2020	지출증빙서류 증빙 기한 미준수	지출증빙서류 등 5일 이내 등록 요청

- 미술영재 지원 사무의 예술학교 진학률은 3%로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운영방식 재점검을 통해 더 많은 교육생들이 대학 진학과 직업 예술가로서의 자립 등 실질적인 교육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서울특별시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미술영재)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59
----------	-----

제출년월일 : 2022년 8월 29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저소득층 미술영재 교육 지원 사무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1조에 의거, 예술에 재능이 있으나 경제적 여건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을 발굴·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예술적 잠재력 발현과 자아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 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을 위하여 경험 및 전문성과 인적·물적 인프라 등이 풍부한 민간에 교육을 위탁·운영 중이며
- 다. 공모를 통한 재위탁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업명 : 저소득층 미술영재 교육 지원
- 사업내용 : 미술에 재능이 있는 저소득층 학생 발굴, 대학 등의 인적·물적 인프라와 전문성을 활용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
- 교육대상 :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총 100명
- 교육기간 : 약 9개월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위탁(공개모집)

나. 주요 위탁 내용

- 위탁기간 : 3년(2023. 1 ~ 2025. 12)
- 위탁업무
 - 교육생 모집 및 선발, 교육 과정 운영
 - 교육커리큘럼 기획 및 교수진 구성
 - 교육장소 및 협력시설, 교육 기자재 및 물품 확보
- 소요예산 : 250,000천원 * 1년 간 위탁기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1조(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3년도 예산편성 필요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22년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22.7.26.)

※ 작성자 : 문화예술과 예술교육팀 황효빈 (☎ 2133-2565)